
2021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



2022. 4.

서 울 대 학 교
[감 사 팀]

I. 2021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현황

□ 감사 운영 방향

- 5년 이상 종합감사 미실시 기관 감사
- 본부 주관 부속 시설 등 내부통제 기능이 취약한 기관 감사

□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

- 실시 기관(대상기간 : 2021. 3. ~ 2021. 7.)
 - 종합감사(4개 기관) : 행정기구, 단과대학 및 본부 부속시설
- 감사결과 조치사항
 - 신분상 조치 : 1건 1명
 - 시정 : 4건(재정 3건, 5,321,217원 포함)
 - 경고·주의(기관) : 11건
 - 통보·개선 : 7건

II.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

1 개산금 지급 부적정

- 지출원은 운임, 용선료(傭船料), 공사·제조·용역 계약의 대가,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개산(概算)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, 개산금으로 한 경우에는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,
 - ○○○○ 기관에서는 개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용을 임의로 개산하여 지급하고, 정리요건 확정 후에도 즉시 정산하지 않고 5~6개월이 지나서 정산 처리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 규정]

2

예산 관리 및 집행 부적정

- 모든 수입금은 법인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,
- 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은 반드시 지급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, 교수 보직수행경비는 「서울대학교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」의 대상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,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,
 - ○○○○ 기관에서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◇◇◇◇사업 수입금 일부를 지출 절차를 통해 임의로 위 기관 보관금 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계좌에서 관리하면서,
 - 위 보관금 계좌의 자금을 재원으로 「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」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고, 검수조서 및 수령인 명단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 규정,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]

3

사업 운영 부적정

-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,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지양하여야 함에도,
 - ○○○○ 기관에서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며, 운영 중인 사업의 신규 이용자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일부 서비스는 사실상 운영이 종료되는 등 위 사업의 지속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운영위원회 검토·심의 등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]

4

교원 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

- 교원의 학기 중 국외여행 기간은 공무 및 공무외 국외여행을 합하여 학년 통산 21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고, 정부기관의 초청이나 협조지명을 받아 정부(국가)의 국외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표로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 또는 대학 업무수행을 위해 총장이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,
- ○○○○ 기관에서는 국외여행 기간 산입 제외 사유로 볼 수 없는 교원의 국외여행(출장) 일수를 국외여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여, 학년 통산 21일을 초과하는 교원의 국외여행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.

[관련 규정: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]